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62
----------	-------

발의연월일 : 2026. 3. 13.

발 의 자 : 김 건 · 김석기 · 조은희
조경태 · 조배숙 · 김기현
정성국 · 김장겸 · 안철수
김태호 · 진종오 · 한지아
최보윤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1절에 제4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9(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8조의9(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공 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공 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 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 시지, 전자우편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u>